

2026년도 제10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인원 (2개 분야, 총 2명)

채용분야	근무예정기관(근무소재지)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임용기간
정책기획 및 조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경기도 수원시)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교권보호단 운영행정지원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 (경기도 수원시)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내용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정책기획 및 조정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 교육정책의 기획·조정 총괄 ○ 교육감 공약 및 핵심 정책과제 추진 총괄·점검 ○ 교육정책 현안 분석 및 정책 대응 전략 수립 지원 ○ 기타 임용권자 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교권보호단 운영행정지원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교권보호단 실무 지원 총괄 - 사안접수 및 배정 총괄, 교권보호119팀, 통합법률 지원팀 운영 지원 등 ○ 교권보호국(가칭)전환지원 - 조례 개정 관리 지원 및 행·재정업무지원 등 ○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운영 ○ 그 밖에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교권보호 관련 업무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

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정책기획 및 조정 (지방서기관)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u>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u>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u>12년 이상</u>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u>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u>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기획 및 각종 단체(기관) 소통·협력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민간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합산할 수 없음
교권보호단 운영·행정지원 (지방교육 행정주사)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u>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u>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u>5년 이상</u>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u>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u>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송무행정, 강제집행, 비송 사무 및 등기행정, 법률자문(상담), 행정쟁송 대응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 민간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합산할 수 없음

【공통 유의사항】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11.13.) 기준으로 판단**함
- ※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경력증명서(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 등]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근무형태 [예: 전임/비전임(주당 근무시간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경력증명서를 미제출 하거나,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발급 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 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개인사업자 대표자 경력의 경우 실무경력(근무기간·시간,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예: 근로 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 분야별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평가방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 면접점수 공개: 응시자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면접점수 공개를 요청한 경우, 본인의 점수에 한하여 평가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총점 공개

6.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2.(목) ~ 10. 26.(월)	2026. 11. 5.(목)	2026. 11. 13.(금)	정책기획 및 조정 (지방서기관) 교권보호단 운영·행정지원 (지방교육행정주사)	2026. 11. 24.(화)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함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예정임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뉴스/소식→시험정보→기타 시험안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2.(목)~10. 26.(월)

나.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운영담당

※ (우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 09:00~18:00에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겹봉투는 해당 공고문의 서식 중 [봉투 표지 양식]을 활용

※ 원서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발송 전 유선 연락(☎ 031-249-0352, 0364)

라. 접수확인: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마.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2026.10.29.까지)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

※ 스테이플러, 플래그(띠지)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자필서명 필수)
2. 응시원서	○ [별지서식 제1호] 응시하는 분야와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함 ○ 응시수수료 - (방문 접수시) 현금 납부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u>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우편통상환은 16:30까지 구입 가능)</u>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발송하여야 하며,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 우편통상환을 구입·발송하여야 함 - 지방서기관: 10,000원 - 지방교육행정주사: 7,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3. 이력서	○ [별지서식 제2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4. 자기소개서	○ [별지서식 제3호]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서식 제4호] A4 4매 이내로 작성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서식 제5호] 자필서명 필수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서식 제6호] 자필서명 필수
8.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별지서식 제7호] 자필서명 필수
9. 주민등록표 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고등학교 졸업자 등,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u>응시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u>를 포함하여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등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 ※ 응시요건 확인 및 전형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함

구 분	내 용
11.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력에 대해서는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소득증빙을 증빙하여야 하여야 함.
12.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근무형태[예: 전임/비전임(주당 근무시간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발급 확인자 성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 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대표자 경력의 경우 실무경력(근무기간·시간,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예: 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13.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 응시하는 분야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제출

9. 임용기간 및 보수 사항

가. 근무조건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임용기간	근무시간
정책기획 및 조정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임용일로부터 2년	주 40시간
교권보호단 운영·행정지원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임용일로부터 2년	주 40시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비 고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4급(상당)	-	69,663	
6급(상당)	86,606	57,708	

- 상기 연봉액(봉급액) 외에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급여(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기타 안내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031-249-0352, 0364)
 - 채용분야 업무 관련
 - 정책기획및조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031-249-0054)
 - 교원보호단운영·행정지원: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031-249-0992)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근무예정기관 (근무소재지)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 인원	임용기간
정책기획 및 조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경기도 수원시)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요업무	○ 교육정책의 기획·조정 총괄 ○ 교육감 공약 및 핵심 정책과제 추진 총괄·점검 ○ 교육정책 현안 분석 및 정책 대응 전략 수립 지원 ○ 기타 임용권자 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 교육정책 분석 및 현안 대응 능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능력 ○ 정책 메시지 구성 및 자료 검토 능력 ○ 위기상황 대응 및 정책 리스크 관리 능력			
필요지식	○ 교육자치, 지방자치 및 교육행정 제도에 대한 이해 ○ 경기교육 주요 정책, 교육감 공약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 ○ 정책 기획·조정, 성과관리, 공약관리 및 현안관리 관련 지식 ○ 공공갈등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이해			
응시자격 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기획 및 각종 단체(기관) 소통·협력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민간 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합산할 수 없음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근무예정기관 (근무소재지)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 인원	임용기간
교권보호단 운영· 행정 지원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 (경기도 수원시)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요업무	○ 교권보호단 실무 지원 총괄 - 사안 접수 및 배정 총괄, 교권보호119팀·통합법률지원팀 운영 지원 - 교권보호전담관 및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관련 행·재정 지원 - 교권보호 관련 사업계획 수립·운영 및 예산·행정업무 지원 ○ 교육활동보호사안대응지원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아동학대 피신고·악성민원 사안 처리 지원 -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부서·교육지원청·관계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 사안별 지원 현황 및 후속 조치 관리 ○ 교권보호국(가칭)전환지원 - 설치조례 개정에 대비한 조직 설계·인력 편제 등 관리 지원 - 교권보호단 운영 성과 및 업무체계 정비 - 교권보호국 전환에 따른 행·재정 업무 지원 ○ 그밖에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교권보호 관련 업무
------	---

필요역량	○ 교권보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다수 부서·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능력 ○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복합적인 사안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피해교원, 학교, 교육지원청, 법률·상담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 사업계획, 예산, 조직·인사,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 피해교원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안 관련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책임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	--

필요지식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지원, 교권보호 관련 정책 및 업무체계에 대한 이해 ○ 사안 유형별 처리 절차와 학교·교육지원청·관계기관의 역할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 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인사·예산·사업계획 및 행정절차에 관한 기본 지식 ○ 경찰, 지방자치단체, 법률·상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체계에 대한 이해 ○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기록·문서관리 등 공공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령 및 행정지식
------	--

응시자격 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송무행정, 강제집행, 비송사무 및 등기행정, 법률자문(상담), 행정쟁송 대응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민간 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합산할 수 없음